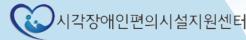
## 2021

#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교육

\* 본 교육 자료는 공공건물 모니터링 사업을 위한 것으로 일부 기준이 연합회에서 발간한 매뉴얼 보다 완화된 점 참고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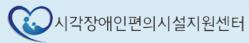
- 모니터링 근거
- 보건복지부 지침, 장애인 복지사업안내 '4-7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센터 운영'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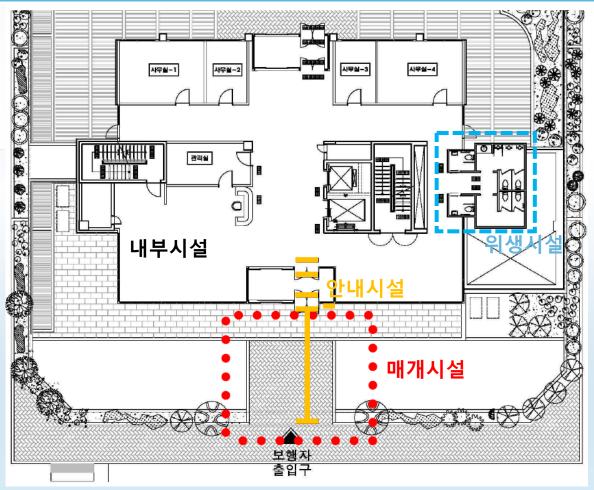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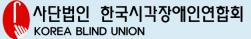
##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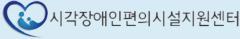
- 매개시설\_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 내부시설\_ 출입구(문), 복도, 계단, 승강기 등
- 때 위생시설\_ <sub>화장실</sub>
- **안내시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등
- 기타시설\_ 비치용품



##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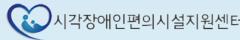
## 1. 접근로

#### 가. 차도경계

- ※ 조사대상: 건축물의 대지경계에서 본관(주동)에 이르는 접근로 중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접근로 1 개소를 선정.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접근로(대중교통시설에서 가까운 곳으로 사람이 이동이 가장 빈번한 곳)
  - 1) 장애인등편의법 세부기준
    -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부분에는 기타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 설치. 곤란한 경우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함.

#### 핵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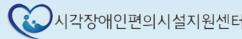
접근로는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물리적 시설 설치 또는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해서 차도와 명확하게 구분



#### 1. 접근로

#### 가. 차도경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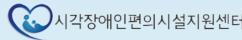
- 2) 용어
  - (1) 접근로: 외부 도로에서 건물의 주출입구까지 이르는 대지면적 내에 보행로
  - (2)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함: 바닥 마감재 표면의 거칠기, 바닥 블록의 줄눈의 변화 등으로 시각장애인이 발의 촉감으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정도를 뜻함.
  - (3) 연석: 보행의 안전, 노면배수, 시선유도, 도로용지의 경계, 유지관리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도, 식수대 등과 차도의 경계선에 연접하여 설치하는 경계석을 말한다.
  - (4) 대지면적: 건축용어로 집을 지을 땅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



### <u>1. 접근로</u>

#### 가. 차도경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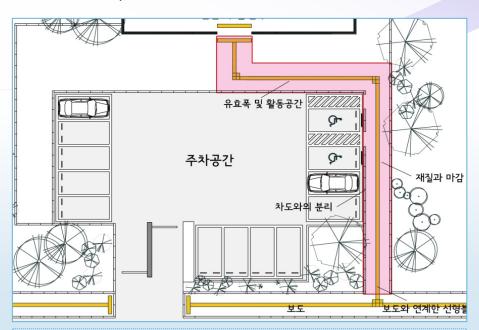
- 3) 지침 설명
  - (1)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는 물리적으로 구분되어야 함.
  - (2) 물리적 구분이 곤란한 경우 경계부분이나 접근로와 차도의 바닥재 질감을 달리하 도록 함.
  - (3) 물리적 구분 방법: 높이차가 있는 연석 설치, 울타리 난간 등 설치, 기타 시설주가 구분하기 위해 공작물(유도봉 등)을 설치



## <u>1. 접근로</u>

#### 가. 차도경계

4) 올바른 설치 사례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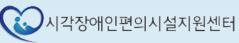


건축물의 대지면적 내에 차량의 동선과 보행자의 동선이 연석 높이를 통해 물리적으로 완벽히 구분되어 있음.



주차장과 접근로의 경계에 단차를 두어 물리적으로 분리하였음. (차량의 접근로 진입을 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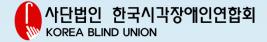
## 1. 접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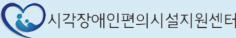
#### 가. 차도경계

5) 잘못 설치된 사례 설명



라인 마킹으로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을 분리하였으나, 바닥 재질이 다르지 않아 시각장애인은 촉감으로 접근로와 차도를 구분하기 어려움. 즉 분리를 시도했으나 그 방법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





## 1. 접근로

#### 가. 차도경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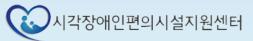
6) 미설치 사례 설명



보행자를 위한 접근로 자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선형블록은 설치되어 있으나 바닥마감이나 경계가 차도와 구분되어 있지 않아 보행장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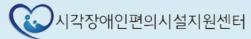
## 1. 접근로

#### 가. 차도경계

7) 해당없음 사례 설명



접근로에 차량의 간섭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배치, 구조인 경우



#### 1. 접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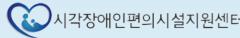
#### 나. 보행장애물 제거

- 1) 장애인등편의법 세부기준
  - 접근로에 가로등·전주·간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함.
  - 가로수는 지면에서 2.1미터까지 가지치기를 하여야 함.

#### 핵심

건물 대지면적 내의 접근로에는 시각장애인이 보행시 충돌할 우려가 있거나 보행시 방해되는 고정된 시설물은 제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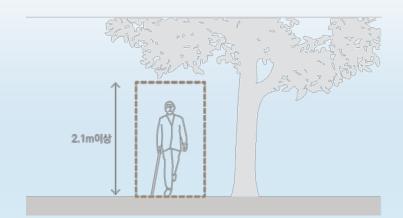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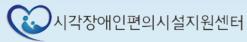


### <u>1. 접근로</u>

### 나. 보행장애물 제거

- 2) 용어 설명
  - (1) 전주: 전신·전화·전등 등의 전선을 지지하는 기둥
  - (2) 간판: 기관, 상점, 영업소 등에서 광고를 하기 위해 설치하는 표지물.
  - (3) 가지치기: 나무 하부의 가지 일부를 잘라 주는 일
  - (4) 고정된 시설물: 설치가 되어 움직일 수 없는 시설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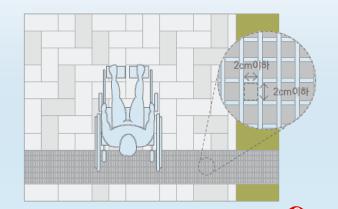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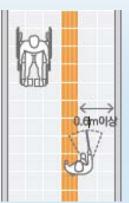


#### 1. 접근로

#### 나. 보행장애물 제거

- 3) 지침 설명
  - (1) 접근로에 가로등·전주·간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함.
  - (2) 가로수는 지면에서 2.1미터까지 가지치기를 하여야 함.
  - (3) 바닥덮개의 구멍이나 틈새는 간격이 2센티 이하가 되도록 함.
  - (4) 보행장애물 조사 범위는 접근로 선형블록과 좌우 0.6미터의 폭을 기준으로 조사함.





## <u>1. 접근로</u>

#### 나. 보행장애물 제거

4) 올바른 설치 사례 설명



접근로의 선형블록 설치위치 좌우 60센티 폭에 어떠한 장애 물도 있지 않음.



접근로의 선형블록 설치위치 좌우 60센티 폭에 어떠한 장애 물도 있지 않음.

## <u>1. 접근로</u>

#### 나. 보행장애물 제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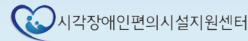
5) 잘못 설치된 사례 설명



선형블록 인근(60센티 이내)에 가로수가 있어 보행 장애요소가 됨.



선형블록 인근(60센티 이내)에 볼라드가 있어 보행 장애요소가 됨.



## 1. 접근로

※ 참고 '1. 접근로' 항목 전체가 해당없음이 되는 사례



건축물의 주출입구(문)가 인근 도로에 접해있어 접근로라는 공간 자체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

#### <u>2.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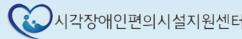
가. 경사로 손잡이 점자표지판

- ※ 조사대상: 본관(주동)의 외부 출입구중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출입구.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람의 출입이 가장 빈번한 출입구를 대상으로 봄.
  - 1) 장애인등편의법 세부기준
    - 손잡이의 양끝부분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함.

### 핵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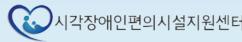
높이차이 제거를 위한 경사로에 손잡이가 있을 경우 실제 위치 정보를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설치하여 정보를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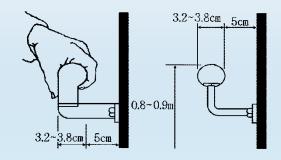
### <u>2.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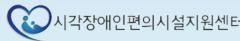
- 2) 용어 설명
  - (1) 높이차이 제거: 건물에 침수를 막고자 접근로에서 건물을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주출입구 높이 차이라고 하며, 휠체어사용자의 출입을 가능하도록 높이 차이를 경사로로 해소하는 것을 높이차이 제거라 함.



### <u>2.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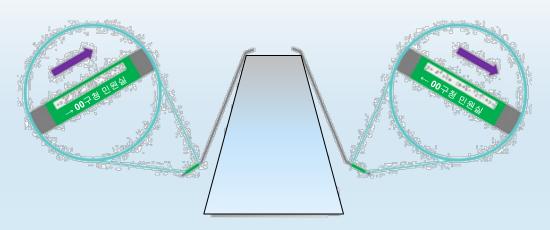
- 3) 지침 설명
  - (1) 손잡이 세부기준: 계단이나 경사로를 오르내릴 때 하중을 손으로 분산하여 편하게 보행하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뜻하며, 0.8~0.9미터의 설치 높이, 벽과 손잡이의 간격 5 센티미터 확보, 원형의 3.2~3.8센티미터 지름 준수, 손잡이 시작과 끝부분 30센티이상 의 수평손잡이 설치 등 관련 세부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동 세부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손잡이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 (2) 경사로의 시작과 끝부분 수평손잡이에 점자표지판을 설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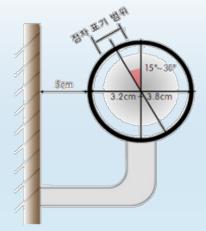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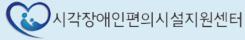
### <u>2.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u>

- 3) 지침 설명
  - (3) 점자표지판 세부 설치 위치: 양쪽 손잡이의 끝 부분 수평손잡이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함. 손잡이 양쪽 끝부분에 수평으로 된 부분이 없을 경우 가장 인접 부분에 설치하는 것 까지를 적정으로 보며, 점자의 표기 각도는 15~30도 정도 벽쪽으로 기울여 설치를 적정으로 봄.(각도를 측정하여 적정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어느 정도 기울여 표기될 경우 올바른 것으로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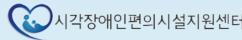






### 2.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 3) 지침 설명
  - (4) 경사로 손잡이 점자 문구: 단순 '올라감', '내려감'이 아닌 진행방향(화살표), 건물명이나 시설명, 나가는 지역명이나 방향을 표기함. 단 나가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위치정보 제공이 어려운 경우 부득이 '→ 나가는 곳' '← 접근로' 등으로 표기 가능하며, 기타 적정한 문구 사례는 다음과 같음.
    - 들어가는 방향: '화살표 00구청', ' 화살표 00구청 방면', '화살표 00구청 주출입구'
    - 나가는 방향: '좌측 보건소, 우측 별관 방면', '화살표 주차장', '화살표 나가는 곳'
  - (5) 점자표지판 세부 체크항목인 '설치 위치', '내용 표기', '유지 관리'를 상기의 지침을 기준으로 확인하여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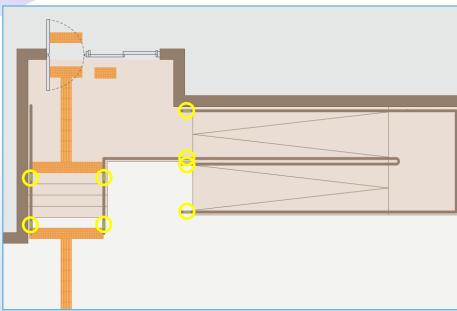
## <u>2.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u>

#### 가. 경사로 손잡이 점자표지판

4) 올바른 설치 사례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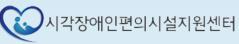


주출입구 전면 단차 제거를 위한 경사로 손잡이 앙측에 점자 표지판이 위치 정보를 잘 표기하여 설치되어 있음.



경사로 상부와 하부 양쯕면에 위치 정보 표기를 위한 점자표 지판이 총 4개 설치되어 있음.





### <u> 2.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u>

#### 가. 경사로 손잡이 점자표지판

5) 잘못 설치된 사례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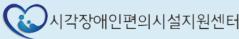


경사로 손잡이 점자의 문구가 의미없이 '경사로 내려감'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그 마저도 거꾸로 시공되어 있어 촉지가불가능함.



경사로 손잡이 점자의 문구가 의미없이 '올라감'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일부 점은 망실하여 촉지가 불가능함.





## 2.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 가. 경사로 손잡이 점자표지판

6) 미설치 사례 설명



주출입구 경사로 손잡이에 점자표지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음.



주출입구 경사로 손잡이에 점자표지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음.

### <u>2.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u>

#### 가. 경사로 손잡이 점자표지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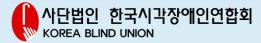
7) 해당없음 사례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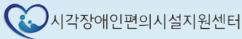


주출입구 전면에 높이차이 제거를 위한 경사로는 있으나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 점검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미설치가 아니라 해당없음임.



손잡이의 직경이 50센티 이상으로 손잡이 자체의 규격이 잘 못 손잡이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로 점자표지판은 미설치 가 아니라 해당없음으로 조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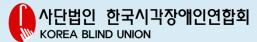
### <u>2.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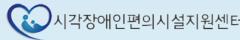
나. 단차 손잡이 점자표지판

- 1) 장애인등편의법 세부기준
  - 손잡이의 양끝부분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함.

#### 핵심

단차에 손잡이가 있을 경우 실제 위치 정보를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설치하여 정보를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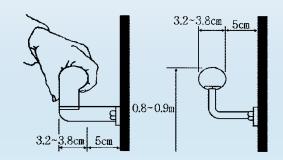
## 2.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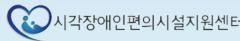
- 2) 용어 설명
  - (1) 단차: 주출입구와 접근로에서 발생한 높낮이의 차.



#### 2.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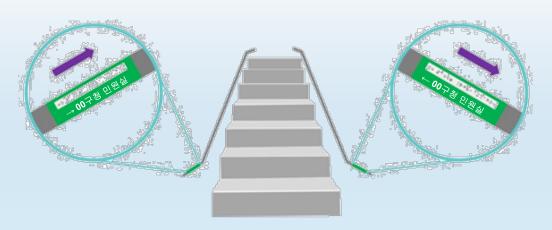
- 3) 지침 설명
  - (1) 손잡이 세부기준: 계단이나 경사로를 오르내릴 때 하중을 손으로 분산하여 편하게 보행하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뜻하며, 0.8~0.9미터의 설치 높이, 벽과 손잡이의 간격 5 센티미터 확보, 원형의 3.2~3.8센티미터 지름 준수, 손잡이 시작과 끝부분 30센티이상 의 수평손잡이 설치 등 관련 세부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동 세부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손잡이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 (2) 단차의 시작과 끝부분 수평손잡이에 점자표지판을 설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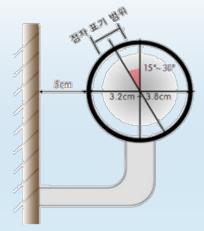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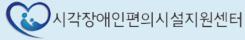
#### 2.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 3) 지침 설명
  - (3) 점자표지판 세부 설치 위치: 양쪽 손잡이의 끝 부분 수평손잡이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함. 손잡이 양쪽 끝부분에 수평으로 된 부분이 없을 경우 가장 인접 부분에 설치하는 것 까지를 적정으로 보며, 점자의 표기 각도는 15~30도 정도 벽쪽으로 기울여 설치를 적정으로 봄.(각도를 측정하여 적정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어느 정도 기울여 표기될 경우 올바른 것으로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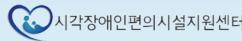






### <u>2.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u>

- 3) 지침 설명
  - (4) 단차 손잡이 점자 문구: 단순 '올라감', '내려감'이 아닌 진행방향(화살표), 건물명이나 시설명, 나가는 지역명이나 방향을 표기함. 단 나가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위치 정보 제공이 어려운 경우 부득이 '→ 나가는 곳' '← 접근로' 등으로 표기 가능하며, 기타적정한 문구 사례는 다음과 같음.
    - 들어가는 방향: '화살표 00구청', ' 화살표 00구청 방면', '화살표 00구청 주출입구'
    - 나가는 방향: '좌측 보건소, 우측 별관 방면', '화살표 주차장', '화살표 나가는 곳'
  - (5) 점자표지판 세부 체크항목인 '설치 위치', '내용 표기', '유지 관리'를 상기의 지침을 기준으로 확인하여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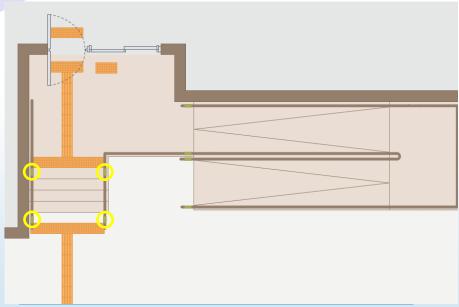
## 2.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 나. 단차 손잡이 점자표지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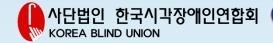
4) 올바른 설치 사례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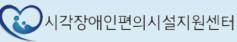


단차 손잡이의 수평부분에 시설명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이 올 바른게 설치되어 있음.



단차 경사로 수평손잡이에 시설명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이 올 바르게 설치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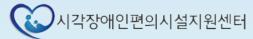
## 2.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나. 단차 손잡이 점자표지판

5) 잘못 설치된 사례 설명



점자 문구가 '내려감'으로 위치 정보(시설명칭)이 누락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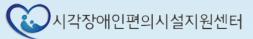
## 2.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 나. 단차 손잡이 점자표지판

6) 미설치 사례 설명



단차 손잡이 점자표지판 설치 누락



## <u>2.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u>

나. 단차 손잡이 점자표지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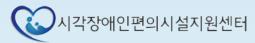
7) 해당없음 사례 설명



단차 손잡이의 규격이 올바르지 않아 손잡이로 볼 수 없어서 점자표지판 자체 설치가 무의미하므로, 해당없음으로 조사



단차 양측면에 손잡이 자체가 설치가 되지 않아 점자표지판 설치가 부가능한 경우로 해당없음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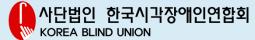
#### 2.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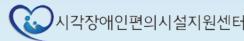
다. 단차 점자블록

- 1) 장애인등편의법 세부기준
  - 계단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의 0.3미터 전면에는 계단의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함.

#### 핵심

단차의 시작과 끝나는 지점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단차 폭 만큼 전 면에 점형블록을 한줄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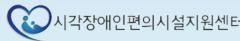




### <u>2.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u>

#### 다. 단차 점자블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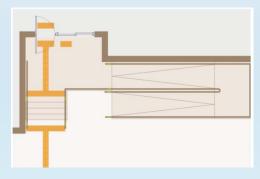
- 2) 용어 설명
  - (1)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함: 현행법 세부기준에는 점형블록 외 대체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체물이 점자블록의 기능 이상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점형블록 설치가 정론이며, 문화재, 특수한 바닥 재질 등 점자블록 설치가 불가한 경우에만 시설주관기관의 완화 승인을 받아 대체물 설치를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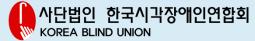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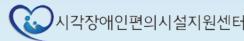
### 2.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 다. 단차 점자블록

- 3) 지침 설명
  - (1) 단차의 시작과 끝 단차의 폭만큼 점형블록 설치: 점형블록은 현장가공을 금하므로 계단의 실 유효폭을 넘지 않도록 설치함. (예: 1.4m 유효폭 단차 계단은 점형블록 0.3m × 4장 = 1.2m 설치)
  - (2) 단차에 참이 있는 경우 참 시작과 끝에 30센티 이격하여 단차 폭만큼 점형블록 설치
  - (3) 단차 점자블록은 외부 설치에 되므로 고무재, 철재 등은 사용을 금함.
  - (4) 점자블록세부 체크항목인 '재질 규격', '이격거리', '진행 및 설치위치'. '유지관리'를 상기의 지침을 기준으로 확인하여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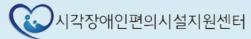
## 2.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 다. 단차 점자블록

4) 올바른 설치 사례 설명



단차의 폭만큼 점형블록이 상부와 하부에 30센티 이격하여 설치되어 있음.



### <u>2.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u>

### 다. 단차 점자블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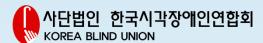
5) 잘못 설치된 사례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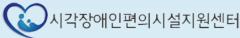


단차의 폭만큼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30센티 이격되어 있지 않음.



단차 하부의 점형블록은 스탠리벳돌기형으로 재질이 불량하고 상부와 하부 모두 전면 이격거리가 30센티 미만으로 잘 못 설치되어 있음.





## 2.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다. 단차 점자블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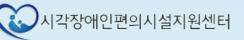
6) 미설치 사례 설명



단차 상부와 하부에 점형블록이 설치 누락됨.



단차 상부와 하부에 점형블록이 설치 누락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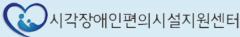
## <u>2.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u>

※ 참고 '2. 주출입구(문)의 단차, 경사로' 항목 전체가 해당없음이 되는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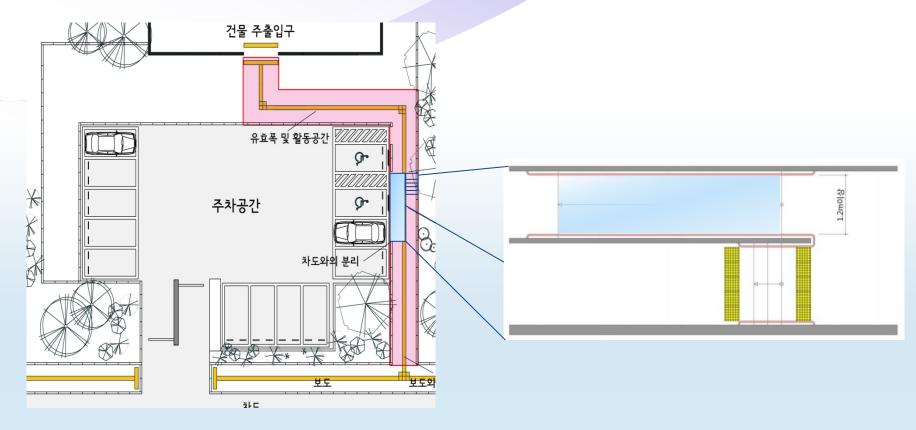
건물 주출입구에 별도의 단차가 없는 형태는 단차 점형블록 설치 여부 해당없음임.





## 2.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 참고 '접근로'에 단차와 경사로가 있는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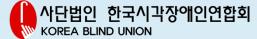
### 1. 출입구(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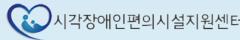
#### 가. 주출입구 점형블록

- ※ 조사대상: 주출입구 점형블록의 대상은 접근로에서 설정한 본관(주동)의 외부 출입구중 1개를 대상으로 보되 방풍실이 있을 경우 외부와 내부를 통합하여 조사함.
  - 1) 장애인등편의법 세부기준
    - 건축물 주출입구의 0.3미터 전면에는 문의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
      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함.

### 핵심

건물의 실내와 실외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여러 외부 출입문 중 적어도 한 개의 문 전면과 후면에 문의 폭만큼 점형블 록을 0.3미터 전면에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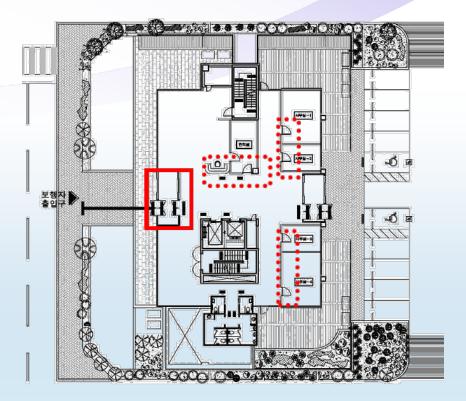


# п. 내부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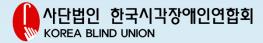
## 1. 출입구(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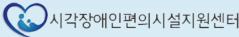
### 가. 주출입구 점형블록

2) 용어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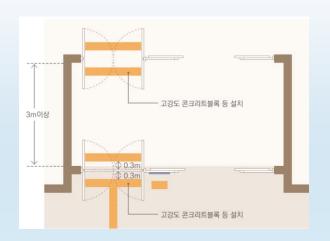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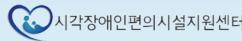


## 1. 출입구(문)

#### 가, 주출입구 점형블록

- 3) 지침 설명
  - (1) 출입문의 폭만큼 점형블록을 0.3미터 전면 설치: 문틀(문프레임)에서가 아닌 실제 열리는 문, 손잡이가 있는 문에서부터 0.3미터 전면을 기준으로 함.
  - (2) 문의 폭만큼 설치: 점형블록은 현장가공을 금하므로 출입문의 실 유효폭을 넘지 않도록 설치함. (예: 2.2m 유효폭의 문은 점형블록 0.3m \* 7장 = 2.1m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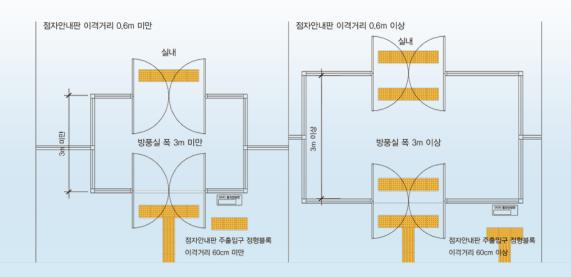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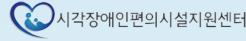


## 1. 출입구(문)

### 가. 주출입구 점형블록

- 3) 지침 설명
  - (3) 방풍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방풍실의 폭이 3미터 이상이면 방풍실 내에도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3미터 미만인 경우는 생략가능함.
  - (4) 주출입문 포함 건물내 점자블록의 재질은 고무재도 허용하며, 부착 시공 가능함.





## 1. 출입구(문)

### 가. 주출입구 점형블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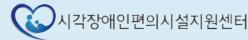
4) 올바른 설치 사례 설명



주출입구 전면에 문 폭만큼, 전면 거리 30센티 확보하여 설치



2개의 문중 우측문에 문 폭만큼 점형블록, 전면 30센티 확보 하여 설치



## 1. 출입구(문)

#### 가. 주출입구 점형블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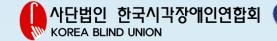
5) 잘못 설치된 사례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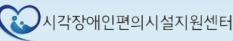


방풍실이 있는 주출입구 내부에는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으나 외부에는 미설치된 사례로 설치 + 미설치 인 경우 = 잘못설치된 사례 임.



문 폭만큼 점형블록 설치하지 않았으며 30센티 전면 이격거리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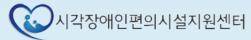
## <u>1. 출입구(문)</u>

#### 가. 주출입구 점형블록

6) 미설치 사례 설명



조사대상인 주출입구 전후면 방풍실 내부 외부 모두에 점형 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 <u>1. 출입구(문)</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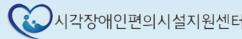
#### 나. 실내출입문 점자표지판

※ 조사대상: 건물 내 시설 이용자 출입이 가능한 실내 공간 중, 그 쓰임이 시설의 주용도인 사무실인 경우

- 1) 장애인등편의법 세부기준
  - 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문 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함.

### 핵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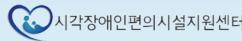
건물 안 시설 이용자가 접근 가능한 실내 공간 중, 해당 시설의 주용도에 해당하는 사무실 등은 시각장애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표지판을 설치



### <u>1. 출입구(문)</u>

#### 나. 실내출입문 점자표지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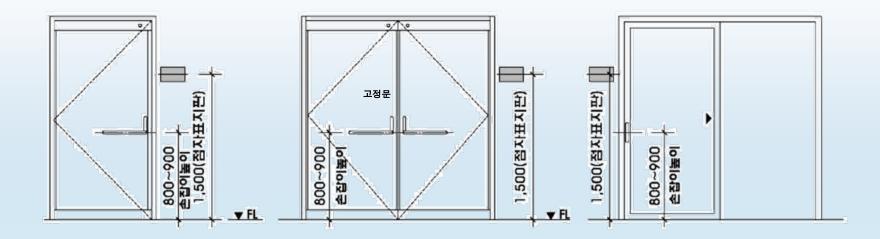
- 2) 용어 설명
  - (1)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 시설 이용자가 접근 가능한 실을 뜻함. 주로 00과, 민원실, 휴게실, 부대시설 등이 이에 해당하며, 외부인 출입금지나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자 동선, 별도의 실명이 없는 실내출입문 등은 제외됨.
  - (2) 출입문 옆 벽면: 문손잡이 쪽 벽면을 뜻하되 문에서부터 30cm 이내를 뜻함. 문의 형태가 양여닫이문인 경우 고정문이 아닌 문 쪽 벽면을 올바른 위치로 보되, 고정문이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 들어가는 방향으로 문의 우측이나 좌측 어디에든 설치 가능함.
  - (3) 실명: 사무실명을 뜻하며, 묵자와 동일하게 점자 문구를 표기하도록 한다. 점자라고 해서 불필요하게 내용을 덧붙이거나 생략할 필요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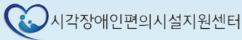


## 1. 출입구(문)

### 나. 실내출입문 점자표지판

- 3) 지침 설명
  - (1) 1.5미터의 높이: 표지판의 설치 높이 1.5미터는 바닥으로부터 1.5미터에 점자표지판이 걸치면 올바른 설치 위치로 봄.
  - (2) 양개문(양여닫이문)인 경우 고정문이 아닌 출입문의 벽면에 설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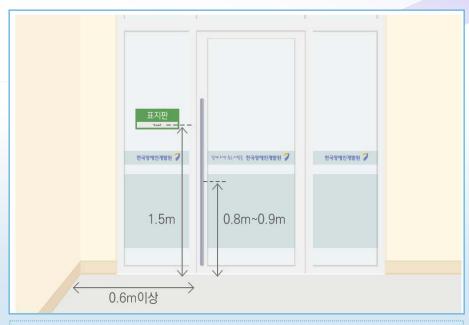




## 1. 출입구(문)

#### 나. 실내출입문 점자표지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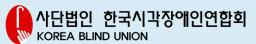
4) 올바른 설치 사례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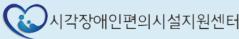


실내출입문 문 손잡이 쪽 벽면에 바닥에서부터 1.5미터 정도에 실명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이 올바르게 설치되어 있음.



실내출입문 문 손잡이 쪽 벽면에 바닥에서부터 1.5미터 정도에 실명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이 올바르게 설치되어 있음.





## 1. 출입구(문)

### 나. 실내출입문 점자표지판

5) 잘못 설치된 사례 설명



문 손잡이측 벽면이 아닌 벽면에 점자표지판이 잘못 설치된 사례



점자표지판의 설치 높이가 150센티에 걸치지 않는 높이에 잘 못 설치됨.

## 1. 출입구(문)

### 나. 실내출입문 점자표지판

6) 미설치 사례 설명



여닫이문에 점자표지판이 미설치되어 있음.



양개문에 점자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 2. 복도

#### 가. 보행장애물 제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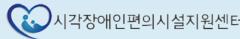
※ 조사 대상: 한 개의 건물 내 이용자 접근 가능한 모든 복도

- 1) 장애인등편의법 세부기준
  - 통로상부는 바닥면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유효높이를 확보하여야 함. 다만, 유효높이 2.1미터 이내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 이하에 접근 방지용난간 또는 보호벽을 설치하여야 함.

### 핵심

건물 내 보행자가 접근 가능한 공간 중 2.1미터 보다 낮은 곳에 건축 구조물이나 설비 등이 있을 경우 시각장애인이 지팡이로 인지 할 수 없으므로 장애 요소를 제거하거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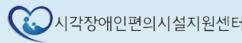




### 2. 복도

#### 가. 보행장애물 제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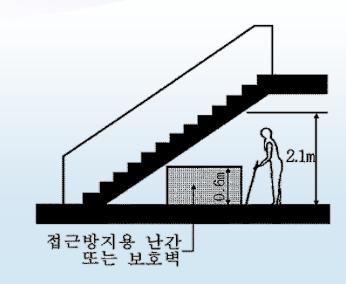
- 2) 용어 설명
  - (1) 유효높이 2.1미터: 보행자의 최대 신장을 고려 2.1미터로 설정하였으며, 유효 높이는 바닥면에서부터의 실제 높이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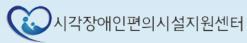


### <u> 2. 복도</u>

#### 가. 보행장애물 제거

- 3) 지침 설명
  - (1) 건물 내 이용자가 접근 가능한 복도에 하부 높이 2.1미터 이하의 공간이 있는 경우보행 장애물 제거가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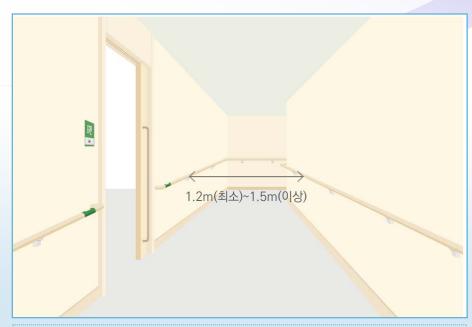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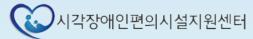
## 2. 복도

## 가. 보행장애물 제거

4) 올바른 설치 사례 설명



복도에 어떠한 보행상 장애물도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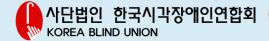
### 2. 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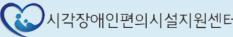
#### 가. 보행장애물 제거

5) 잘못 설치된 사례 설명



상부 높이 2.1미터 이하의 공간에 접근방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없어 충돌 등의 사고 유 발 가능성이 있음.





### 3. 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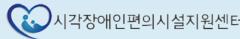
#### 가. 손잡이 점자표지판

- ※ 조사 대상: 건물 내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 계단 1개소를 선택하여 조사하되, 층수는 주차장 층에서부터 이용자 접근 가능한 가장 높은 층(공중 이용 사무실이 있는 층)까지로 함. 지상에서 바로 연결되는 계단은 외부 계단으로 조사함. 손잡이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계단 손잡이는 해당없음으로 보고, 조사대 상에서 제외함.
  - 1) 장애인등편의법 세부기준
    - 계단의 양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함.
    - 경사면에 설치된 손잡이의 끝부분에는 0.3m 이상의 수평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함.
    -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 야 함.

### 핵심

시각장애인이 건물의 층간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계단의 층 시작과 끝 부분 수평 손잡이에 화살표, 층수와 주요실명 등을 표기한 점자표지판 을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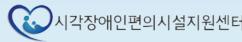




### 3. 계단

#### 가. 손잡이 점자표지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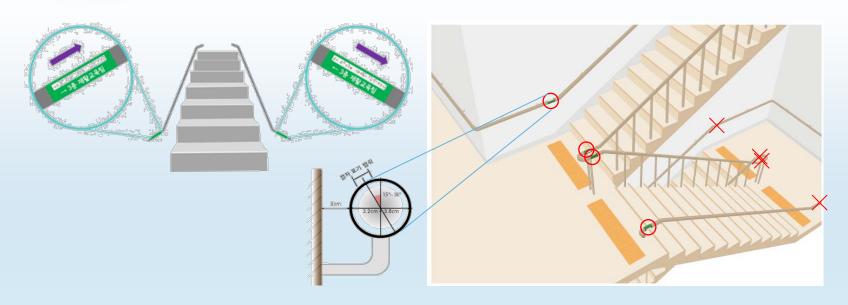
- 2) 용어 설명
  - (1)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 현행법에는 층의 시작과 끝부분 외 계단참 등 굴절 부분까지 점자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굴절부분의 점자는 오히려 시각장애 인에게 층 도착여부를 확인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어 계단참의 점자표지판은 설치 생 략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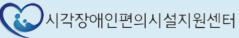
## 3. 계단

### 가. 손잡이 점자표지판

- 3) 지침 설명
- (1) 설치 위치: 계단 시작과 끝부분의 수평손잡이에 점자표지판을 15~30도 기울여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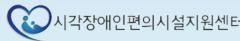




### 3. 계단

#### 가. 손잡이 점자표지판

- 3) 지침 설명
  - (2) 점자의 문구는 화살표, 층수와 주요 사무실명의 위치 정보를 표기해야 하며, 단순히 올라감 내려감 등은 의미가 없는 문구로 부적정하며, 점자 문구 사례는 다음과 같음.(올바른 띄어쓰기 여부는 생략함.)
    - 올바른 설치 사례: '→ 2층 종합민원실'. '← 1층 사회복지과 주민복지과' 등
    - 잘못된 사례: '→ 2층', '종합민원실', '1층 사회복지과'
  - (3) 주 계단의 손잡이가 손잡이 세부기준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경우, 점자표지판 설치 여부를 떠나 모두 해당없음으로 조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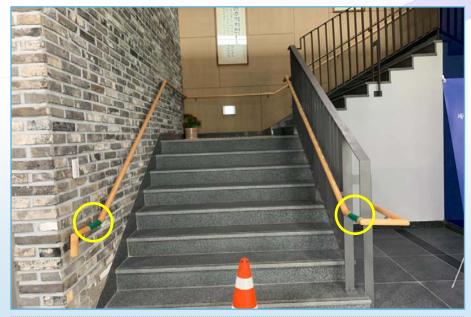


# п. 내부시설

## 3. 계단

### 가. 손잡이 점자표지판

4) 올바른 설치 사례 설명



계단 양측면 손잡이 중 수평구간에 층정보와 사무실명 등 위 치정보를 표기한 점자표지판이 올바르게 설치되어 있음.



계단 손잡이에 점자표지판이 올바르게 설치되어 있음.

# 田. 내부시설

## 3. 계단

#### 가. 손잡이 점자표지판

5) 잘못 설치된 사례 설명



계단 손잡이의 점자 문구가 단순 올라감으로 층정보와 주요 사무실 명등 위치 정보가 누락되어 있음.



수평손잡이에 설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사구간에 잘못 설치한 사례

## 3. 계단

### 가. 손잡이 점자표지판

6) 미설치 사례 설명



계단 손잡이에 점자표지판이 미설치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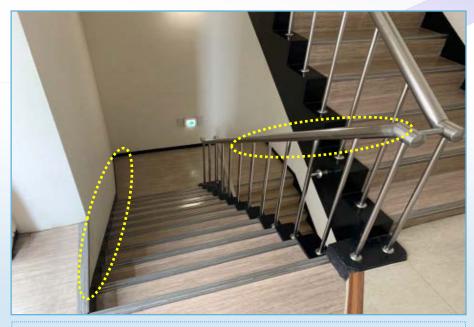


계단 손잡이에 점자표지판이 미설치된 사례로, 수평구간이 없을 경우 가장 가까운 구간에도 점자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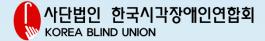
## 3. 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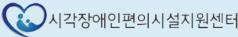
#### 가. 손잡이 점자표지판

7) 해당없음 사례 설명



계단에 손잡이 자체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손잡이의 직경이 4센티를 초과하는 등 계단 손잡이의 세부기준이 올바르지 못 한 경우 점자표지판은 미설치가 아니라 해당없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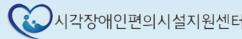
### 3. 계단

#### 나. 줄눈넣기 또는 미끄럼방지

- 1) 장애인등편의법 세부기준
  - 계단코에는 줄눈넣기를 하거나 경질고무류 등의 미끄럼방지재로 마감하여야 한다. 다만, 바닥표면 전체를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함.

### 핵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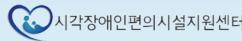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등의 낙상 사고 예방으로 위해 계단 디딤판에 미끄럼 방지를 해야 함.



### 3. 계단

#### 나. 줄눈넣기 또는 미끄럼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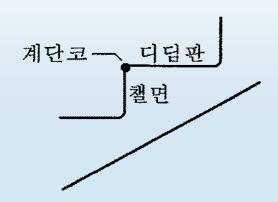
- 2) 용어 설명
  - (1) 계단코: 계단 챌면보다 조금 더 튀어나온 디딤판의 끝부분.
  - (2) 줄눈넣기: 계단코 부근에 계단 폭 방향으로 음각으로 줄을 내어 파 낸 것.
  - (3) 경질고무류: 신축성이 적고 단단한 고무를 일컫는 것으로 탄성이 좋고 너무 무르면 논슬립으로 사용이 불가
  - (4) 표면 전체를 미끄럽지 아니 하는 재질로 마감한 경우: 화강석 잔다듬 또는 버너구이 마감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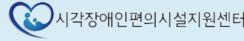
## 3. 계단

#### 나. 줄눈넣기 또는 미끄럼방지

- 3) 지침 설명
  - (1) 계단코 부근에 줄눈이나 논슬립을 계단의 폭만큼 설치하도록 함. 단 계단 디딤판 자체가 미끄럽지 않은 재질(화강석 버너구이나 고운다음 마감)인 경우는 줄눈이나 논슬립 설치 생략 가능.







# п. 내부시설

## 3. 계단

#### 나. 줄눈넣기 또는 미끄럼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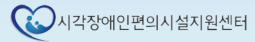
4) 올바른 설치 사례 설명



계단코 부분에 줄눈으로 미끄럼방지 처리했음.



계단 바닥 마감 자체가 논슬립 처리(화강석 버너구이 또는 잔다듬)가 되어 있어 줄눈 설치가 생략되었음. 올바른 사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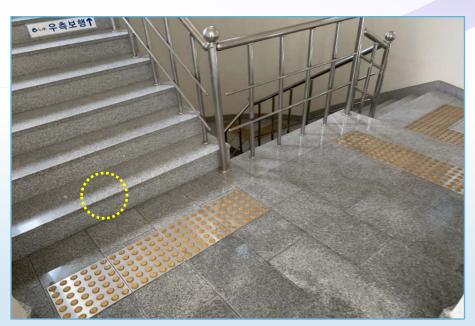


# 田. 내부시설

## 3. 계단

#### 나. 줄눈넣기 또는 미끄럼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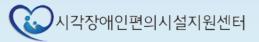
5) 미설치 사례 설명



디딤판 자체가 미끄러운 재질인 경우인데, 계단코 부분에 논 슬립, 줄눈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디딤판 자체가 미끄러운 재질인 경우인데, 계단코 부분에 논 슬립, 줄눈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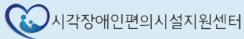
### 3. 계단

#### 다. 점형블록

- 1) 장애인등편의법 세부기준
  - 계단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의 0.3미터 전면에는 계단의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함.

#### 핵심

계단에서 시각장애인이 계단의 폭 및 시작과 끝을 흰지팡이와 발의 촉 감으로 확인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계단의 전면 0.3미터에 계단의 폭만큼 한줄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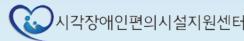


# **Ⅲ. 내부시설**

#### 3. 계단

#### 다. 점형블록

- 2) 용어 설명
  - (1)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함: 현행법 세부기준에는 점형블록 외 대체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체물이 점자블록의 기능 이상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점형블록 설치가 정론이며, 문화재, 특수한 바닥재질 등 점자블록 설치가 불가한 경우에만 시설주관기관의 완화 승인을 받아 대체물 설치를 허용
  - (2) 계단의 폭만큼 설치: 점형블록은 현장가공을 금하므로 계단의 실 유효폭을 넘지 않도록 설치함. (예: 1.6m 유효폭 계단은 점형블록 0.3m × 5장 = 1.5m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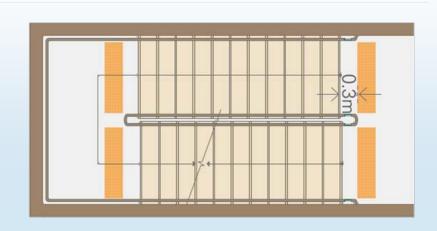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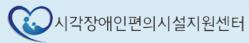
## 3. 계단

#### 다. 점형블록

- 3) 지침 설명
  - (1) 계단의 시작과 끝, 참에는 0.3미터 전면에 점형블록을 계단의 폭만큼 설치. 이때 전면 0.3미터의 허용오차는 ±10%로 함.

(예: 0.28미터 전면 설치 = 적정, 0.34 미터 전면 = 부적정)





# 3. 계단

#### 다. 점형블록

4) 올바른 설치 사례 설명



계단의 폭만큼 점형블록이 전면 30센티에 올바르게 설치되어 있음.



계단의 폭만큼 점형블록이 전면 30센티에 올바르게 설치되어 있음.

## 3. 계단

#### 다. 점형블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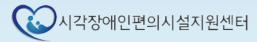
5) 잘못 설치된 사례 설명



점형블록이 전면 30센티에 설치되어 있으나 계단폭 만큼 설 치되어 있지 않음.



계단의 폭 이상 설치되어 있으며, 전면 거리도 30센티 초과 하여 설치되어 있음.



# 3. 계단

#### 다. 점형블록

6) 미설치 사례 설명



계단의 상부와 참부분에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계단의 참 상부와 하부에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 **Ⅲ. 내부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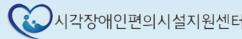
#### 4. 승강기

#### 가. 모든 버튼 점자표기

- ※ 조사 대상: 건물 내 장애인 안내표지가 있는 승강기 1개소를 선택하여 조사하되, 안내표지가 있는 승강기가 여러 개인 경우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승강기를 선택하여 전층 조사함.(층수는 계단과 동일)
  - 1) 장애인등편의법 세부기준
    - 조작설비의 형태는 버튼식으로 하되, 시각장애인 등이 감지할 수 있도록 층수 등을 점 자로 표시하여야 함.

### 핵심

시각장애인이 승강기를 편하게 조작하기 위해 상·하 호출버튼, 내부 층 과 호출 버튼 등 모든 버튼에는 점자를 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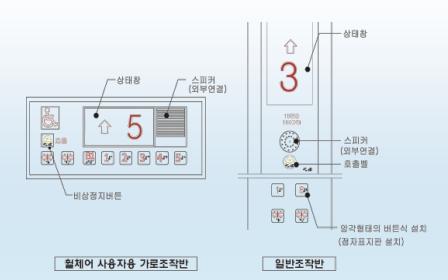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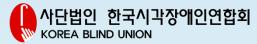
# **Ⅲ. 내부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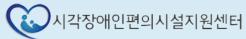
### 4. 승강기

#### 가. 모든 버튼 점자표기

- 2) 지침 설명
  - (1) 층수 등을 점자로 표시: 버튼에 표기된 묵자와 동일한 문구의 점자가 버튼 안이나 버튼의 우측 또는 아래에 표기하도록 함.(버튼 점자: 상, 하, 호출, B1, 1, 2, 3, 개, 폐)
  - (2) 점자 표기의 범위: 호출버튼, 카내 세로조작반과 가로조작반







## 4. 승강기

#### 가. 모든 버튼 점자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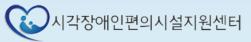
3) 올바른 설치 사례 설명



승강기 상하 호출버튼에 점자가 올바르게 표기되어 있음.



승강기 카내 조작반에 층수 버튼과 호출버튼, 개폐버튼에 점 자가 올바르게 표기되어 있음.



## 4. 승강기

#### 가. 모든 버튼 점자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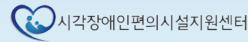
4) 잘못 설치된 사례 설명



승강기 호출버튼의 '하'버튼에 점자가 '하아'로 잘못 표기되어 있음.



승강기 호출버튼의 '상'버튼에 점자가 'UP'로 영문 표기되어 있고 일부 점이 눌려 표기가 불가한 등 잘못 설치되어 있음.



# 4. 승강기

#### 가. 모든 버튼 점자표기

5) 미설치 사례 설명



승강기 호출버튼의 '상'버튼에 점자가 누락되어 있음.



승강기 카내 세로조작반에 점자가 전부 누락되어 있음.

## 4. 승강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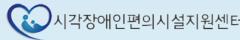
#### 나. 도착안내

- 1) 장애인등편의법 세부기준
  - 각 층의 승강장에는 승강기의 도착여부를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향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의 내부에는 도착층 및 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성신호장 치를 설치하여야 함.

#### 핵심

시각장애인이 승강기의 도착 여부를 명확히 인지하기 위해 도착음 출력과 동시에 점멸이 되는 램프가 승강기 대기공간에 설치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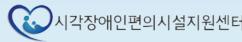


# **Ⅲ. 내부시설**

### 4. 승강기

#### 나, 도착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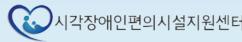
- 2) 용어 설명
  - (1) 승강장: 승강기를 호출하는 공간으로 승강 대기 공간을 뜻함.
  - (2) 점멸등: 불이 켜졌다 꺼졌다 하는 깜박이는 전등, 버튼의 점멸도 포함
  - (3) 음향신호장치: 승강기에서 나는 소리로 도착을 알려주는 장치, 통상 딩동 소리 또는 종소리가 출력
  - (4) 음성신호장치: 승강기에서 나는 음성으로 문의 개폐, 운행상황 등을 알려주는 장치, 통상 문이 열립니다. 닫힙니다.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등이 출력



### 4. 승강기

#### 나. 도착안내

- 3) 지침 설명
  - (1) 각 층의 승강장에는 승강기의 도착여부를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향신호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 (2) 승강기의 내부에는 도착층 및 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성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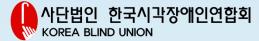
# 4. 승강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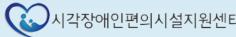
### 나. 도착안내

3) 올바른 설치 사례 설명



도착 확인을 위한 도착 알림 점멸등이 승강기 호출버튼과 상부에 설치되어 있음. 둘 중에 한 개만 설치되어도 올바른 설치임.





# п. 내부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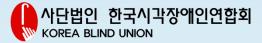
# 4. 승강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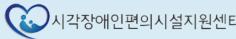
### 나. 도착안내

3) 올바른 설치 사례 설명 \_ 동영상(승강장)



도착 확인을 위한 도착 알림 점멸등이 승강기 호출버튼과 상부에 설치되어 올바르게 동작하고 있음.





# п. 내부시설

# 4. 승강기

### 나. 도착안내

3) 올바른 설치 사례 설명 \_ 동영상(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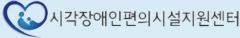




도착 확인을 층 선택 버튼의 점멸로 확인할 수 있음.

카내에서 도착층 안내와 승강기 운행상황을 음성으로 알려주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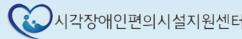
### 4. 승강기

#### 다. 호출버튼 점형블록

- 1) 장애인등편의법 세부기준
  - 각 층의 장애인용 승강기의 호출버튼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 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함.

#### 핵심

승강기 호출버튼의 위치 정보를 시각장애인에게 알려주기 위해 호출 버튼 전면 0.3미터에 점형블록을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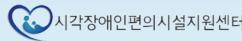


# **Ⅲ. 내부시설**

#### 4. 승강기

#### 다. 호출버튼 점형블록

- 2) 용어 설명
  - (1) 호출버튼: 승강기를 호출하는 버튼으로 상, 하 버튼
  - (2)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함: 현행법 세부기준에는 점형블록 외 대체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체물이 점자블록의 기능 이상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호출버튼 전면 0.3미터에 점형블록 2장 설치가 정론이며, 문화재, 특수한 바닥재질 등 점자블록 설치가 불가한 경우에만 시설주관기관의 완화 승인을 받아 대체물 설치를 허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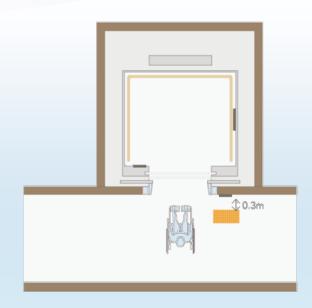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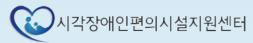
# п. 내부시설

# 4. 승강기

#### 다. 호출버튼 점형블록

- 3) 지침 설명
  - (1) 호출버튼 전면 0.3미터에 점형블록 2장 설치(허용오차 ±10%)





# п. 내부시설

# 4. 승강기

#### 다. 호출버튼 점형블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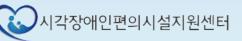
4) 올바른 설치 사례 설명



승강기 호출버튼 전면 30센티에 점형블록이 2장이 올바르게 설치되어 있음.



승강기 호출버튼 전면 30센티에 점형블록이 2장이 올바르게 설치되어 있음.



## 4. 승강기

#### 다. 호출버튼 점형블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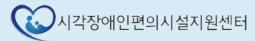
5) 잘못 설치된 사례 설명



승강기 호출버튼 전면 30센티보다 가까운 곳에 점형블록이 잘못 설치되어 있음.



승강기 호출버튼 전면 조작반의 가로로 2장 잘못 설치되어 있음.



# п. 내부시설

# 4. 승강기

#### 다. 호출버튼 점형블록

6) 미설치 사례 설명



승강기 호출버튼 전면에 점형블록이 미설치되어 있음.



승강기 호출버튼 전면에 점형블록이 미설치되어 있음.

# **Ⅲ. 내부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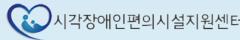
#### 4. 승강기

#### 라. 내부 조작반 음성안내

- 1) 장애인등편의법 세부기준
  - 승강기 내부의 층수 선택버튼을 누르면 점멸등이 켜짐과 동시에 음성으로 선택된 층수를 안내해주어야 한다. 또한, 층수선택버튼이 토글방식인 경우에는 처음 눌렀을 때에는 점멸등이 켜지면서 선택한 층수에 대한 음성안내가, 두 번째 눌렀을 때에는 점멸등이 꺼지면서 취소라는 음성안내가 나오도록 하여야 함.

#### 핵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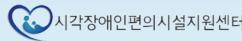
층수 버튼 입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버튼을 누르면 버튼의 점멸등이 켜지면서 층수 음성이 출력되어야 한다. 또한 시각장애인이 층수를 확 인하기 위해 버튼을 촉지하다 원치 않게 누를 수도 있기 때문에 조작 반은 취소음이 출력되는 토글 방식이어야 함.



### 4. 승강기

#### 라. 내부 조작반 음성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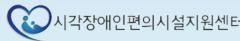
- 2) 용어 설명
  - (1) 토글방식: on/off처럼 두 상태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 승강기에서는 버튼 동작/ 미동작을 뜻함.
  - (2) 점멸등: 불이 켜졌다 꺼졌다 하는 깜박이는 전등, 버튼의 점멸도 포함



### 4. 승강기

#### 라. 내부 조작반 음성안내

- 3) 지침 설명
  - (1) 층수 선택 버튼을 누르면 버튼 내부의 점멸등이 켜짐과 동시에 음성으로 해당 층수 '0층'이라고 안내함.
  - (2) 토글방식인 경우(다시 눌렀을 때 버튼 누름이 취소가 되는 경우에 한함) 두 번째 눌렀을 때 점멸등이 꺼지면서 '취소'라는 음성안내가 출력되어야 함.



# п. 내부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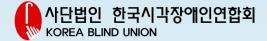
# 4. 승강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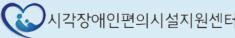
### 라. 내부 조작반 음성안내

4) 올바른 설치 사례 설명\_동영상



승강기 카내 층수선택 버튼이 토글인 경우 두번째 누르면 '취소'라고 음성이 출력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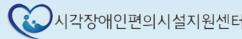
#### 4. 승강기

마. 층별 출입구가 다른 경우 음성안내

- 1) 장애인등편의법 세부기준
  - 층별로 출입구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음성으로 출입구의 방향을 알려주어야 함.

## 핵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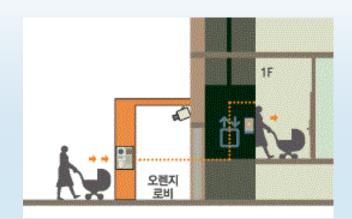
관통형 승강기 등 층별로 출입구 방향이 다를 경우 시각장애인이 열리는 문 방향 확인을 위해 음성으로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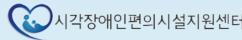


# 4. 승강기

# 마. 층별 출입구가 다른 경우 음성안내

- 2) 용어 설명
  - (1) 관통형 승강기: 승강기를 타서 뒤돌지 않고 앞으로 내리는 형태의 승강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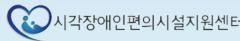




### 4. 승강기

#### 마. 층별 출입구가 다른 경우 음성안내

- 3) 지침 설명
  - (1) 음성으로 출입구의 방향을 알림: 후면에서 문이 열립니다 또는 층별로 출입문 방향이 다를 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등 시각장애인에게 층별로 출입 동선이 다를 수 있음을 알려주도록 함.



# 田. 내부시설

## 4. 승강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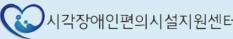
#### 마. 층별 출입구가 다른 경우 음성안내

4) 올바른 설치 사례 설명\_동영상



통과형 승강기으로 앞으로 타서 앞으로 내리는 구조임. '출입문의 방향을 주의 바랍니다.', '앞쪽 문이 열립니다.', '뒤쪽 문이 열립니다.' 등 출입문 열리는 방향에 대해 주의를 주는 안내 멘트가 출력되어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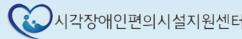
# 4. 승강기

바. 출입구, 승강대, 조작기의 조도

- 1) 장애인등편의법 세부기준
  - 출입구, 승강대, 조작기의 조도는 저시력인 등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최소 150LX 이상으로 하여야 함.

### 핵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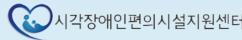
시각장애인이 승강기를 원활히 조작, 탑승하기 위해 최소한의 밝기는 확보되어야 함.



### 4. 승강기

바. 출입구, 승강대, 조작기의 조도

- 2) 용어 설명
  - (1) 승강대: 승강기(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한 공간으로 승강기 출입구 전면 공간을 뜻함.
  - (2) 최소 150LX(룩스): KS 기준 조도로 고휘도 대비 혹은 큰 물체 대상의 시작업 수행이 가능한 활동의 최소 조도값(조도계로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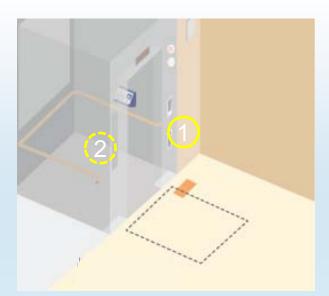
# **Ⅲ. 내부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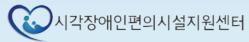
## 4. 승강기

바. 출입구, 승강대, 조작기의 조도

- 3) 지침 설명
  - (1) 승강대 호출버튼과 카내 세로형 조작반에서의 조도는 150룩스 이상이어야 함.

(예: 지하2층 ~ 10층 건물인 경우 각층 호출버튼에서 측정(12회) + 카내 측정(1회) = 13회 측정, 이는 점자표지판 조사 수와 같으며 측정 도구는 제공된 조도계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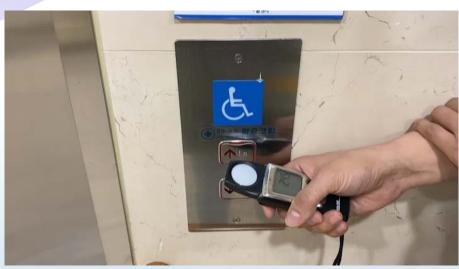
## 4. 승강기

바. 출입구, 승강대, 조작기의 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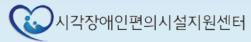
4) 올바른 설치 사례 설명



카내 세로조작반 중 상단의 버튼을 기준으로 조도를 측정 150룩스 이상으로 적정



승강대 호출버튼의 상부분을 기준으로 조도를 측정 150루스 이상으로 적정



# **Ⅲ. 내부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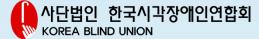
## 5. 에스컬레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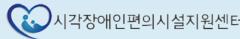
#### 가. 수평 고정손잡이 점자표지판

- 1) 장애인등편의법 세부기준
  - 수평이동손잡이 전면에는 1미터 이상의 수평고정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으며, 수평고 정손잡이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함.

## 핵심

에스컬레이터 전면 수평고정손잡이가 있을 경우 시각장애인이 건물의 층간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에스컬레이터 시작과 끝 부분의 수평고정 손잡이에 화살표, 층수와 주요실명 등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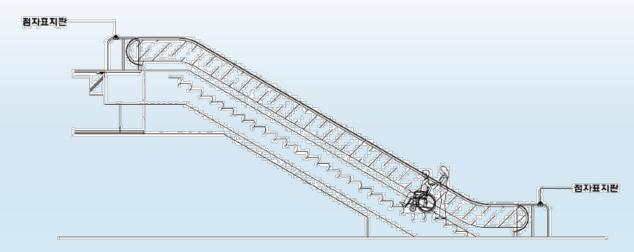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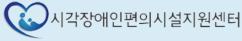
# 표. 내부시설

### 5. 에스컬레이터

#### 가. 수평 고정손잡이 점자표지판

- 2) 용어 설명
  - (1) 수평이동손잡이 세부기준: 에스컬레이터의 시작과 끝부분 수평으로 이동하는 손잡이를 뜻함.
  - (2) 수평고정손잡이 세부기준: 에스컬레이터 승강공간 전면에 별도로 설치된 고정된 손잡이를 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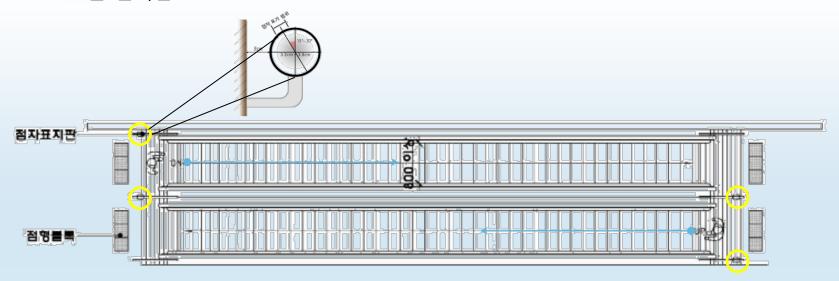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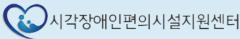
# 표. 내부시설

## <u>5. 에스컬레이터</u>

#### 가. 수평 고정손잡이 점자표지판

- 3) 지침 설명
  - (1) 설치 위치: 에스컬레이터 수평 고정손잡이 시작 부분에 점자표지판을 15~30도 기울여 설치. 이때 에스컬레이터의 운행 방향에 해당하는 고정 손잡이에만 점자표지판을 설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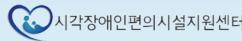


# **Ⅲ. 내부시설**

## 5. 에스컬레이터

#### 가. 수평 고정손잡이 점자표지판

- 3) 지침 설명
  - (2) 점자의 문구는 화살표, 층수와 주요 사무실명의 위치 정보를 표기해야 하며, 단순히 올라감 내려감 등은 의미가 없는 문구로 부적정하며, 점자 문구 사례는 다음과 같음.(올바른 띄어쓰기 여부는 생략함.)
    - 올바른 설치 사례: '→ 2층 종합민원실'. '← 1층 사회복지과 주민복지과' 등
    - 잘못된 사례: '→ 2층', '종합민원실', '1층 사회복지과'
  - (3) 수평 고정손잡이가 손잡이 세부기준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경우, 점자표지판 설치 여부를 떠나 모두 해당없음으로 조사함.



# **Ⅱ.** 내부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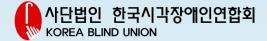
# 5. 에스컬레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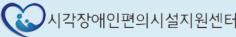
### 가. 수평 고정손잡이 점자표지판

4) 올바른 설치와 해당없음 사례 설명



에스컬레이터 진입후 좌측 수평 고정손잡이에는 점자표지판이 올바르게 설치되어 있으며, 우측은 고정손잡이 자체가 있지 않아 해당 없음으로 조사.





# 표. 내부시설

# 5. 에스컬레이터

#### 가. 수평 고정손잡이 점자표지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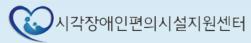
4) 잘못 설치된 사례 설명



에스컬레이터 수평고정 손잡이 안쪽에 점자표지판이 설치되면 내용 확인이 늦게되므로 잘못된 설치로 조사함.



에스컬레이터 수평고정 손잡이 안쪽에 점자표지판이 설치되면 내용 확인이 늦게되므로 잘못된 설치로 조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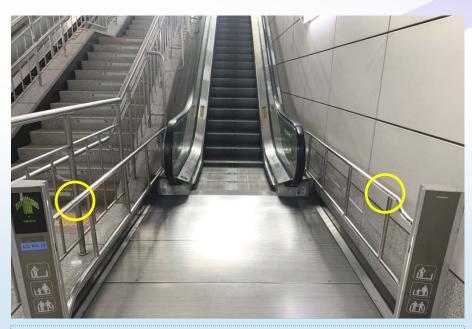


# п. 내부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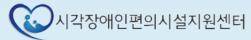
# 5. 에스컬레이터

### 가. 수평 고정손잡이 점자표지판

5) 미설치 사례 설명



에스컬레이터 수평고정 손잡이에 위치 정보 표기한 점자표지 판이 미설치되어 있음.



# **Ⅲ. 내부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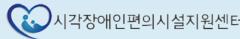
### 6. 경사로

#### 가. 손잡이 점자표지판

- ※ 조사 대상: 층간 연결 경사로를 뜻하는 것으로 복도의 단차 제거를 위한 경사로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계단과 동일하게 층간 연결 경사로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주 경사로 1개소를 택하여 조사
  - 1) 장애인등편의법 세부기준
    -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함.

### 핵심

시각장애인이 건물의 층간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경사로의 층 시작과 끝 부분의 수평 손잡이에 화살표, 층수와 주요실명 등을 표기한 점자 표지판을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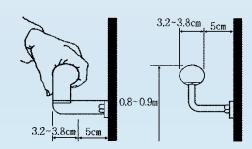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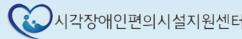
# 표. 내부시설

### 6. 경사로

#### 가. 손잡이 점자표지판

- 2) 용어 설명
  - (1) 경사로: 주출입구 높이차 제거를 위한 경사로가 아닌 층간 수직이동 수단으로서의 경사로를 뜻함.
  - (2) 층수·위치: 화살표, 층수와 주요 사무실명 위치 정보를 표기해야 하며, 단순히 올라 감 내려감 등은 의미가 없는 문구로 부적정함.
  - (3) 손잡이 세부기준: 계단이나 경사로를 오르내릴 때 하중을 손으로 분산하여 편하게 보행하도록 설치하는 핸드레일을 뜻하며, 0.8~0.9미터의 설치 높이, 벽과 간격 5센티미터 확보, 원형의 3.2~3.8센티미터 지름 준수 등 관련 세부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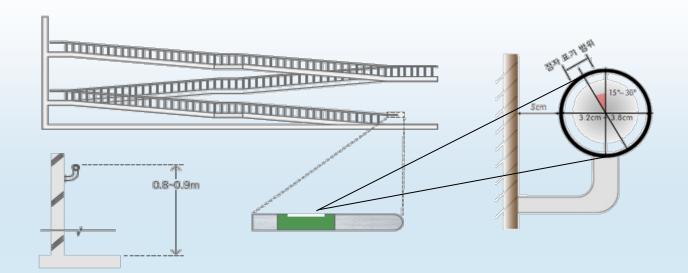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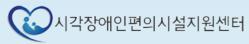
# 표. 내부시설

# 6. 경사로

#### 가. 손잡이 점자표지판

- 3) 지침 설명
  - (1) 설치 위치: 경사로 시작 부분에 점자표지판을 15~30도 기울여 설치. 이때 에스컬레이터의 운행 방향에 해당하는 고정 손잡이에만 점자표지판을 설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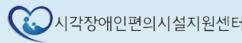


# **Ⅲ. 내부시설**

### 6. 경사로

#### 가. 손잡이 점자표지판

- 3) 지침 설명
  - (2) 점자의 문구는 화살표, 층수와 주요 사무실명의 위치 정보를 표기해야 하며, 단순히 올라감 내려감 등은 의미가 없는 문구로 부적정하며, 점자 문구 사례는 다음과 같음.(올바른 띄어쓰기 여부는 생략함.)
    - 올바른 설치 사례: '→ 2층 종합민원실'. '← 1층 사회복지과 주민복지과' 등
    - 잘못된 사례: '→ 2층', '종합민원실', '1층 사회복지과'
  - (3) 경사로의 손잡이가 손잡이 세부기준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경우, 점자표지판 설치 여부를 떠나 모두 해당없음으로 조사함.



### 1. 화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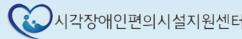
#### 가. 일반화장실 점자표지판

- ※ 조사 대상: 건물 내 모든 남녀 일반화장실을 모두 조사함. 한 층에 일반남녀화장실 각 2개, 별도의 장애인용 화장실 남녀 각 1개 설치되어 있을 경우, 해당 층은 남자2, 여자2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함. 단 한 층에 일반화장실이 없이 장애인화장실만 있을 경우는 해당 장애인화장실을 일반화장실로 보고 조사함.
  - 1) 장애인등편의법 세부기준
    -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출입구(문)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고, 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은 0.9미터 이상으로 하여야함.

### 핵심

비시각장애인이 남자용과 여자용 화장실을 표지판을 보고 구분하듯, 시각장애인이 남·여 화장실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점자표지판 을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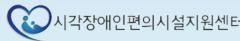




### 1. 화장실

#### 가. 일반화장실 점자표지판

- 2) 용어 설명
  - (1)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 일반화장실 내에 휠체어사용자가 이용 가능한 넓은 대변기 칸이 있을 경우 일반화장실 벽면에 점자표지판 설치하고, 일반화장실과 장애인용 화장실이 따로 구분되어 있을 경우는 일반화장실에 점자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을 뜻함.
  - (2) 남·여 화장실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을 부착: 시각장애인이 남자용과 여자용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점자표지판을 설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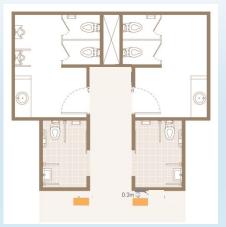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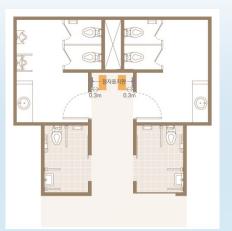
## <u>1. 화장실</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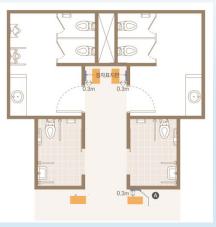
#### 가. 일반화장실 점자표지판

- 3) 지침 설명
  - (1) 화장실의 남·여 구분을 위한 올바른 점자표지판 설치 위치는 복도에 면한 부분에서 좌측과 우측 등 위치 정보를 제공한 경우, 진입 후 남·여 각 출입문에서 구분한 경우, 복도에 면한 부분에서 남·여 구분하여 설치된 경우 등임. 설치 위치는 바닥에서부터 1.5미터, 남녀를 구별한 위치라고 판단된 경우 모두 올바른 설치로 봄.(문손잡이 쪽 벽면이 아닌 경우도 적정으로 봄)









## <u>1. 화장실</u>

#### 가. 일반화장실 점자표지판

- 2) 용어 및 지침 설명
  - (2) 화장실 점자 문구는 남자화장실의 경우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의 경우 '여자화장실'로 함. 복도에서 좌우 설명으로 구분도 올바른 문구로 봄. 점자표지판이 아닌 점자 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이 설치된 경우에도 점자표지판으로 보고 조사함. 이때 높이는 점자안내판 설치 높이 기준을 준용함.(중심선의 높이 1.0~1.5m 정도)









# 1. 화장실

#### 가. 일반화장실 점자표지판

4) 올바른 설치 사례 설명



화장실 출입구 전면에 남녀 구별한 점자표지판(그림의 경우점자안내판)이 올바른 위치에 설치되어 있음.



남자화장실 출입구 전면에 남자 점자표지판이 문 손잡이 쪽 벽면 높이 1.5미터에 올바르게 설치되어 있음.

# 1. 화장실

### 가. 일반화장실 점자표지판

5) 잘못 설치된 사례 설명



화장실 점자표지판이 벽면이 아닌 열리는 문(가동문)에 잘못 설치된 경우



남자 화장실 점자표지판의 설치 높이가 가장 높은 곳이 146 센티로 너무 낮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

# 1. 화장실

## 가. 일반화장실 점자표지판

6) 미설치 사례 설명



남자화장실 벽면에 점자표지판이 미설치되어 있음.



여자화장실 벽면에 점자표지판이 미설치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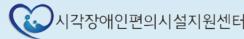
## <u>1. 화장실</u>

#### 나. 일반화장실 점형블록

- 1) 장애인등편의법 세부기준
  -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함.

#### 핵심

점자표지판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시각장애인에게 알려주기 위해 점 자표지판 전면 0.3미터에 점형블록을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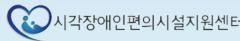


# Ⅲ. 위생시설

## <u>1. 화장실</u>

#### 나. 일반화장실 점형블록

- 2) 용어 설명
  - (1)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함: 현행법 세부기준에는 점형블록 외 대체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체물이 점자블록의 기능 이상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점자표지판 전면 점형블록 2장 설치가 정론이며, 문화재, 특수한 바닥재질 등 점자블록 설치가 불가한 경우에만 시설주관기관의 완화 승인을 받아 대체물 설치를 허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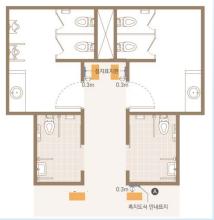


## <u>1. 화장실</u>

#### 나. 일반화장실 점형블록

- 3) 지침 설명
  - (1) 점자표지판 위치가 확연히 잘못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점형블록의 올바른 설치 위치는 점자표지판 전면 0.3미터를 원칙으로 함. 점자표지판이 확연히 잘못된 위치에 설치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점자표지판 위치를 무시하고 점형블록이 남녀를 구별하여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조사하도록 함. 전면 이격거리의 허용 오차는 ±10% 임.(27~33센티)









## <u>1. 화장실</u>

#### 나. 일반화장실 점형블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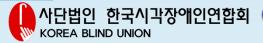
4) 올바른 설치 사례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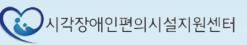


점자표지판 전면에 점형블록이 2장 설치되어 있음. (남녀 화장실을 구별하기 위한 점자표지판의 설치 위치가 확연히 잘못된 경우를 제외하고 점형블록의 올바른 설치위치는 점자표지판 전면으로 함.)



화장실 전면 점자표지판 전면에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음.





# Ⅲ. 위생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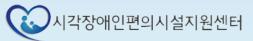
# 1. 화장실

## 나. 일반화장실 점형블록

5) 잘못 설치된 사례 설명



점형블록이 표지판 전면이 아닌 출입문 전면에 잘못 설치되어 있음.



# Ⅲ. 위생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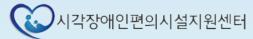
# 1. 화장실

### 나. 일반화장실 점형블록

6) 미설치 사례 설명



화장실 전면 점형블록이 설치가 누락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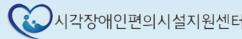
## <u>1. 화장실</u>

#### 다. 세면대 점자표시

- 1) 장애인등편의법 세부기준
  - 세정장치·수도꼭지 등은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함.
  - 수도꼭지는 냉·온수의 구분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함.

#### 핵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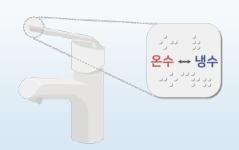
화장실 내 세면대 중 최소 1개는 온수와 냉수 구분을 위해 수도꼭지에 냉·온으로 점자를 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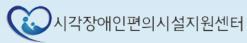


# 1. 화장실

#### 다. 세면대 점자표시

- 2) 용어 및 지침 설명
  - (1) 건물 내 화장실에 설치된 세면대의 수도꼭지가 레버식으로 냉수와 온수가 나올 경우, 모든 수도꼭지에는 냉온수를 구분하기 위한 점자가 표기되어야 함.





# Ⅲ. 위생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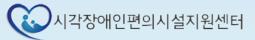
# 1. 화장실

## 다. 세면대 점자표시

3) 올바른 설치 사례 설명



좌온, 우냉 점자가 수도꼭지 레버에 올바르게 표기 되어 있음.



# Ⅲ. 위생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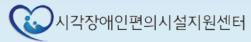
# 1. 화장실

## 다. 세면대 점자표시

4) 미설치 사례 설명



레버형 수도꼭지에 냉온 점자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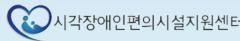


## <u>1. 점자블록</u>

#### 가. 접근로 점자블록

※ 조사 대상: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접근로에 설치된 점자블록

- 1) 장애인등편의법 세부기준
  - 점형블록은 계단·장애인용 승강기·화장실 등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시 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3미터 전면, 선형블록이 시작·교차·굴절되는 지점에 이 를 설치하여야 함.
- 선형블록은 대상시설의 주출입구와 연결된 접근로에서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설치하여야 함.
- 점자블록은 매립식으로 설치하여야 한. 다만, 건축물의 구조 또는 바닥재의 재질 등을 고려해볼 때 매립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부착 식으로 설치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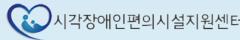


### 1. 점자블록

가. 접근로 점자블록

## 핵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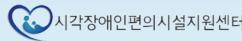
점자블록은 기능과 형태에 따라 선형블록과 점형블록으로 구분되는데 각기 정해진 규격과 색상을 준수해야 함. 점형블록은 편의시설의 전면 0.3미터에 설치하고, 선형블록은 건물 외부 접근로에 접근로 시작지점 에서 건물 주출입문까지 연속적 유도 설치



### <u>1. 점자블록</u>

#### 가. 접근로 점자블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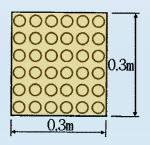
- 2) 지침 설명
  - (1) 점자블록의 규격 및 색상:
    -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하여 점자블록은 감지용 점형블록과 유도용 선형블록을 사용하여야 함.
    - 점자블록의 크기는 0.3미터×0.3미터인 것을 표준형으로 하며, 그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하여야 함.
    - 점형블록은 블록당 36개의 돌출점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함.
    - 점형블록의 돌출점은 반구형·원뿔절단형 또는 이 두가지의 혼합배열형으로 하며, 돌출점의 높이는 0.6±0.1센티미터로 하여야 함.
    - 선형블록은 블록당 4개의 돌출선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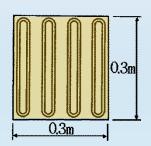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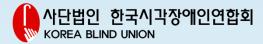
### 1. 점자블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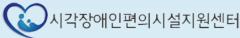
#### 가. 접근로 점자블록

- 2) 지침 설명
  - (1) 점자블록의 규격 및 색상:
    - 선형블록의 돌출선은 상단부평면형으로 하며, 돌출선의 높이는 0.5±0.1센티미터로 하여야 함.
    - 점자블록의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으로 사용하되, 바닥재의 색상과 비슷하여 구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색상으로 할 수 있음.
    - 실외에 설치하는 점자블록의 경우 햇빛이나 불빛 등에 반사되거나 눈, 비 등에 미끄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u>1. 점자블록</u>

#### 가. 접근로 점자블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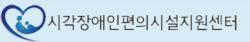
3) 올바른 설치 사례 설명



접근로에서부터 주출입구 전면까지 선형블록이 올바르게 연속 설치되어 있음.



접근로에서부터 단차위 포함 주출입구 전면까지 선형블록이 올바르게 연속 설치되어 있음.



# <u>1. 점자블록</u>

#### 가. 접근로 점자블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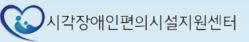
4) 잘못 설치된 사례 설명



접근로 선형블록이 올바른 재질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일부 가 떨어져 방지되어 있음.



주출입구 전면까지 선형블록이 설치되지 않고 끊겨있음.



# <u>1. 점자블록</u>

### 가. 접근로 점자블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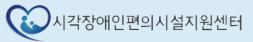
5) 미설치 사례 설명



접근로 선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접근로 선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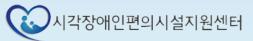
# <u>1. 점자블록</u>

## 가. 접근로 점자블록

6) 해당없음 사례 설명



건축물의 주출입구 도로에 접해 있어 접근로 자체가 없음. 이 럴 경우 선형블록은 미설치가 아니라 해당없음으로 조사.



#### <u> 2. 유도 및 안내설비</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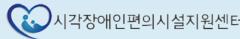
#### 가. 점자안내판 또는 음성안내장치

※ 조사 대상: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주출입구(문) 인근에 설치된 점자안내판 또는 음성안내장치

- 1) 장애인등편의법 세부기준
  -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에는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점자, 양각면 또는 선으로 간략하게 표시하여야 함.
  -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장치는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음성으로 안내하여야 함. 시각장애인용 유도신호장치는 음향·시각·음색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특수신 호장치를 소지한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경우 대상시설의 이름을 안내하는 전자식 신 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음.

#### 핵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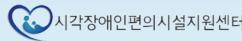
건물의 대략적인 구조, 실내 및 층별 정보를 시각장애인에게 안내하기 위해 점자와 양각된 선으로 표기한 촉지도나 음성으로 실내 정보를 안 내해 주는 장치를 주출입구 인근에 설치하고, 시각장애인이 건물 주출 입구에 쉽게 도달할 수 있도록 유도신호장치를 설치



### 2. 유도 및 안내설비

#### 가. 점자안내판 또는 음성안내장치

- 2) 용어 설명
  - (1) 점자, 양각면 또는 선으로 간략하게 표시: 점자는 한국 점자 규정의 물리적인 규격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0-38호)을 준수하도록 하며, 점자안내판의 도면은 시각장 애인용 촉지안내도 단체표준(SPS-KBUWEL001-5686)을 준수하여야 함.
  - (2) 음성안내장치: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음성으로 안내해주는 장치를 뜻함.
  - (3) 유도신호장치: 음성유도기 또는 음향신호기를 뜻하며, 음성이나 차임벨 등으로 원 거리에서 시각장애인에게 위치 정보를 제공해주는 장치임.
  - (4) 특수신호장치: 음성유도기 또는 음향신호기 리모콘을 뜻하며, 최근에는 BLE 기반 (저전력 블루투스)인 스마트폰으로도 동작하는 시스템이 연구 개발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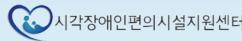


### 2. 유도 및 안내설비

#### 가. 점자안내판 또는 음성안내장치

- 3) 지침 설명
  - (1) 점자안내판 규정: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은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중심선이 바닥면으로부터 1.0미터 내지 1.2미터의 범위안에 있도록 설치하여야 함. 다만,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을 수직으로 설치하거나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내용이 많아 1.0미터 내지 1.2미터의 범위 안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중심선이 1.0미터 내지 1.5미터의 범위에 있도록 설치할 수 있음. 현위치는 도드라져 있어야 하며, 안내도의 설치 위치와 실제 위치, 방위, 건물 내부 위치 정보가 일치하여야 함. '설치 위치', '내용 표기', '유지 관리' 조사
  - (2) 음성안내장치 규정: 통상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음성이 출력되어야 하며, 안내 내용은 해당 시설명과 내부 위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함.
  - (3) 점자안내판 '또는' 음성안내장치로 둘중에 하나라도 올바르면, 적정으로 평가함.





### <u> 2. 유도 및 안내설비</u>

#### 가. 점자안내판 또는 음성안내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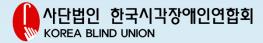
3) 올바른 설치 사례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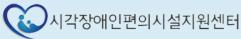


현위치와 실제 방위에 맞게 점자안내판이 올바르게 설치되어 있음. 스탠드형 점자안내판



현위치와 실제 방위에 맞게 점자안내판이 올바르게 설치되어 있음. 벽부형 점자안내판





### 2. 유도 및 안내설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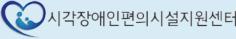
#### 가. 점자안내판 또는 음성안내장치

3) 올바른 설치 사례 설명\_ 음성안내 동영상



점자안내판의 음성안내 멘트에 시설명을 소개하고 있어 올바른 설치로 봄. 최소한 시설명을 소개하면 올바른 설치로 보고 15초를 초과하는 음 성 안내 길이도 올바른 설치로 조사함.





### <u> 2. 유도 및 안내설비</u>

#### 가. 점자안내판 또는 음성안내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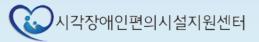
4) 잘못 설치된 사례 설명



점자안내판의 현위치가 도드라지지 않아 현위치 파악이 불가함.



현위치가 도드라지지 않았으며, 실제 설치위치와 점자안내판 설치 위치가 상이함.



### 2. 유도 및 안내설비

#### 가. 점자안내판 또는 음성안내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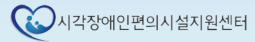
5) 미설치 사례 설명



주출입구 인근에 점자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주출입구 인근에 점자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 <u> 2. 유도 및 안내설비</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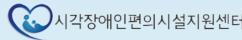
나. 점자안내판 점자블록

- 1) 장애인등편의법 세부기준
  -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또는 그 밖의 유도신호장치를 점자블록과 연계하여 1개 이상 설치하여야함.

### 핵심

시각장애인이 점자안내판과 음성안내장치에 접근하여 안내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로 점자블록에서부터 점자안내판 또는 음성안내장치 전면까지 점자블록이 추가로 유도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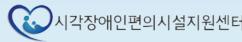




### <u> 2. 유도 및 안내설비</u>

#### 나. 점자안내판 점자블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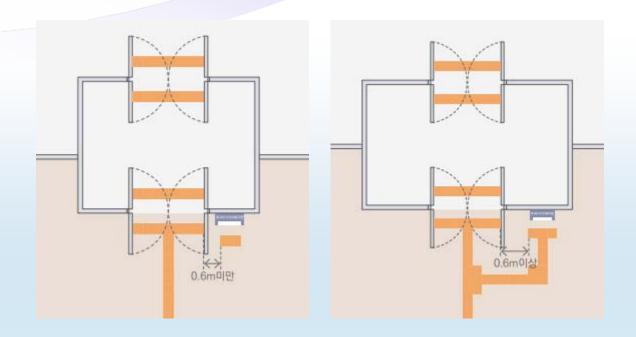
- 2) 용어 설명
  - (1) 점자블록과 연계: 접근로 선형블록에서 점자안내판 또는 음성안내장치 전면까지 추가적으로 선형블록으로 유도하고 전면에 점형블록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출입문 전면에 설치되는 점형블록과의 이격거리가 60센티 이하인 경우 선형블록의 유도설치는 생략하고 전면 점형블록만 설치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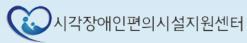


### 2. 유도 및 안내설비

### 나. 점자안내판 점자블록

- 3) 지침 설명
  - (1) 점자안내판 전면 0.3미터에 점자안내판 폭만큼 점형블록 설치





### 2. 유도 및 안내설비

#### 나. 점자안내판 점자블록

3) 올바른 설치 사례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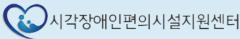


점자안내판 전면에 선형블록이 올바르게 연계 설치되어 있음.



주출입구 전면 점형블록과 60센티 이내로 점자안내판이 설 치되어 선형블록의 유도 설치는 생략하고 전면에만 점형블록 을 점자안내판 폭만큼 설치하였음.





### <u> 2. 유도 및 안내설비</u>

### 나. 점자안내판 점자블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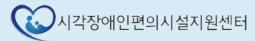
4) 잘못 설치된 사례 설명



점자안내판 전면 점형블록이 10센티 이격하여 잘못 설치되어 있음.



점자안내판 방향과 맞지 않는 위치에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음.



### 2. 유도 및 안내설비

#### 나. 점자안내판 점자블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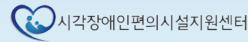
5) 미설치 사례 설명



점자안내판 전면 점자블록 설치가 누락되어 있음.



점자안내판 전면 점자블록 설치가 누락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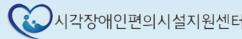
### <u> 3. 경보 및 피난설비</u>

가. 피난구 유도등

- 1) 장애인등편의법 세부기준
  - 시각 및 청각 장애인용 피난구 유도등은 화재 발생 시 점멸과 동시에 음성으로 출력 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함.

#### 핵심

건물 내 화재 발생 시 시각장애인의 피난을 돕도록 나가는 출입문 방향이나 피난 계단 등에 음성이 출력되는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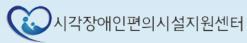


#### 3. 경보 및 피난설비

#### 가. 피난구 유도등

- 2) 지침 설명
  - (1) 음성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설치: 피난 계단이나 외부 출입구에 나가는 방향에 설치하여 '나가는 곳입니다.' '피난 계단입니다.' 등 피난 동선에 맞도록 음성이 출력되는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함. 본 조사에서는 1층 또는 로비층의 외부 출입구 방향으로 최소 1개 이상 설치 여부만 조사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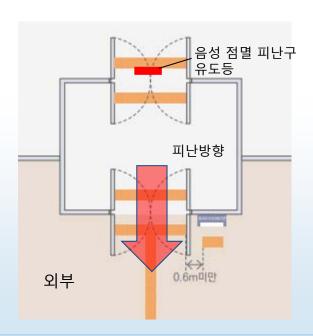
### <u>3. 경보 및 피난설비</u>

가. 피난구 유도등

3) 올바른 설치 사례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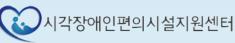


비상시 피난 방향을 알려주기 위한 유도등에 피난 위치 정보가 출력되는 스피커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음.



외부 출입문 방향으로 설치된 사례





# V. 기타시설

### <u>1. 비치용품</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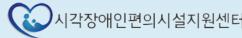
#### 가. 구비하여야 할 비치용품

- 1) 장애인등편의법 세부기준
  - 점자업무 안내 책자: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 중 주요 변경 사항 또는 민원 업무 해설서 등
  - 8배율이상의 확대경

#### 핵심

업무시설을 원활히 보기 위한 비치용품은 각 민원실마다 구비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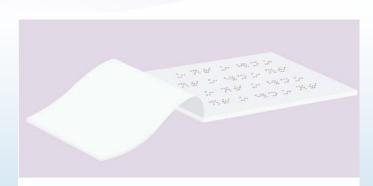


# V. 기타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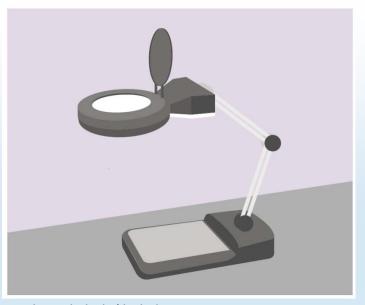
### <u>1. 비치용품</u>

### 가. 구비하여야 할 비치용품

- 2) 지침 설명
  - (1) 건물 내 주요 종합민원실에 아래의 비치용품 2종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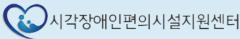


점자업무안내책자



8배율 이상의 확대경





# 수고하셨습니다.

www.kbufac.or.kr



